

# 의약품 및 물품공급 계약 사례

2013. 3. 6 (水)

SAMSUNG CHANGWON HOSPITAL



# 목 차

1 물품공급 계약 일반

2 물품공급 계약서(例)

3 장비 공동운영 계약

# 1. 물품공급 계약 일반

# 1-가. 의의



- 1) 대금 : 운반, 설치비, 부가세 등 포함 여부(乙 : 지연이자)
- 2) 납품 또는 설치기한 : 병원 도착기한, 설치기한(乙 : 연장)
- 3) 설치시간 : 진료없는 야간 or 공휴일 요구 규정

# 1-나. 주요 계약사항

- 4) 지체상금 : 여러물품 / 진료못한 손해(乙 : 사유제한)
- 5) 검수 : 불합격 시 수령거절 or 대금반환(乙 : 교환)
- 6) 유지보수 : “하자”, “고장”, “작동불량”...문구확인/ 비용부담
- 7) 외국회사 계약 시 : 준거법 / 관할법원 설정
- 8) 대리점 또는 지사와 계약 시
  - “甲”, “乙”, “丙”까지 작성할 것 (ex : “丙”은 “乙”의 의무와 연대하여 책임 진다)

## 2. 물품공급 계약서(例)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갑(의료기관)”과 “을(업체)” 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 및 설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계약목적물)

1. 장비명 :
2. 수량 :
3. 금액 : 金 0원(VAT포함)

### 제2조 (장비의 금액)

제1조 3항의 금액은 장비금액 이외에 장비설치비(지게차, 인건비용)를 포함한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4조(계약 조건)

1. 계약목적물의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계약목적물은 검수가 완료 후 “갑”이 합격품으로 인정한 물품으로 한다.
3. “을”은 계약목적물을 현장설치, 검수 및 시운전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한다.
4. 검수 완료 시까지 발생한 기타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조(납품시기)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검수완료 한 것을 장비의 납품 종료시점으로 한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제8조(계약 이행 및 하자보증)

1. “을”은 계약목적물을 납품설치, 검수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그 성능을 보증한다.
2.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의 결함(제조,설계,표시상의 하자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을”이 부담하고 그 계약목적물을 교체할 의무를 진다.
3. 제1,2항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 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을”은 “갑”에게 예치한다.
4. 장비의 무상 A/S기간은 검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5. 고장 발생 시 “갑”은 요구기간 내 “을”에 의한 보수 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 “갑”은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및 대체할 수 있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9조(지체대금)

1. “을”이 제5조의 납품시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1일에 대해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2/1000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지체배상금 총액은 계약금액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갑”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
  - 2) “갑”의 귀책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 3)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때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10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제11조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계약목적물과 현품이 상이했을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2)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기를 지속적으로 지연하였을 경우
- 3) “을”이 “갑”에게 부당한 방법 및 행위로 거래를 수반했을 경우
- 4)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11조(손해배상)

1. 납품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2. 납품 장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을”은 “갑”이 산출한 손해배상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상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본 계약상 모든 책임은 특별손해를 제외한 통상손해에 한하며, 본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12조(기밀 보안)

“을”은 “갑”의 병원 출입과정에서 인지한 “갑” 또는 “갑”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13조(물품의 검수)

1. 물품 검수 시 제1조에 제시된 계약목적물의 사양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갑”은 반품 내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 지체에 다른 지체대금은 제9조 1항을 적용한다.
2. “을”이 물품의 교환 및 수정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검수는 “갑”의 장비 검수확인서 양식에 의거 각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검수의 완료로 본다.
4. 검수는 “갑” 대표3인(사용부서장,의공담당자,구매담당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5. 장비 설치 완료 후 검수 날인은 15일간 실제 사용 후 날인한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 제14조(사후 관리)

1.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조건에 대하여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할 시 “을”은 장비의 선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고장 발생 시 본 조의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갑”의 요구기간 내 “을”에 의한 보수 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또는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A/S응답 시간은 2시간 이내에 통신수단을 이용 서비스 계획을 통보 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장비를 수리해야 한다.
6. 법정 관리장비인 경우 3년마다 시행되는 사후 검사 및 교정은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 2-가. 계약(例)

## 1)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서

10. “을”은 년 1회 이상 용역 점검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합 점검을 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12. 장비에 내장되어진 S/W는 정기적으로 무상 UP-GRADE 시킨다.  
또한 프로그램의 파손, 디스켓의 분실 등으로 프로그램 재설치 시 필요한 모든 조치는 무상 공급한다.

### 제16조(계약 이외의 사항)

1. 본 계약에 관한 소송 발생시 법원의 소재지는 “갑”의 관할지법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쌍방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장비 공동 운영 계약

# 3-가. 의의

## 1) 장비 공동 운영 계약

≡ 시약조건부 장비임대계약

진단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시약판매업체는 의료기관에 영상진단장비를 무상임대하고, 진단시약 가액에 장비 임대료를 반영하여 장비가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계약

# 3-가. 의의

## 2) 리베이트 평가 여부

###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영상진단장비 임대행위가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 제1조 (공동운영 정의)

공동운영이라 함은 “갑(의료기관)”과 “을(업체)”이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와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공동운영 방식)

### 제3조 (공동운영 대상)

1. 품명 : PET-CT(GE, Discovery STE 16)
2. 수량 : 1System
3. “을”은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약세서리 금 000만원(부가세포함)을 장비가에 포함한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 제4조 (장비의 설치 및 이전)

1. 장비의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2. “을”은 장비의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 공사대금 金 000만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한다.
3. 최초 설치 이후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해야 한다.

###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Troso 검사건수가 00,000건에 도달할 때까지로 하며, 기타 부위의 검사는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검사건수는 “갑”의 진료기록에 근거하며, 취소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 제6조 (수입의 배분)

1. “갑”과 “을”의 검사수입금(급여 수가 기준)은 다음의 비율로 배분한다.

검사건수	수가	수입배분		비고
		갑	을	
1 ~ 10,000건	000,000원	33%	67%	
10,001건 ~11,625건		59%	41%	

2. 비급여 적용검사의 수입금 배분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되, 급여 적용 검사 배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 제6조 (수입의 배분)

3. “을”은 수입 배분금을 재료대와 장비사용료로 구분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재료대는 보험상한가로 청구하고 장비사용료는 수입배분금과 재료대의 차액으로 청구한다.

### 제7조 (장비의 소유권 및 계약만료)

1. 계약기간 중 장비의 소유권은 “을”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사에 있다.
2. 제5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본 계약을 종료한다.
3. “을”은 제3조의 계약목적물을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 제10조 (장비의 가동과 유지보수)

1. 계약기간 동안 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응급고장 발생의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을”은 제조사에 통보하여 8시간(교통시간 포함) 이내에 장비의 설치장소에 도착,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4. “을”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 장비의 연간가동율을 9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연간 95%미만일 경우 본 계약 종료후 미만분에 대한 배수분을 무상유지보수계약기간으로 연장한다.

### 제12조(대금지급)

1. “갑”은 매월 25일까지 “을”에게 당월의 Troso 검사 건수를 통보하고, “을”은 재료대와 장비사용료를 구분하여 당월의 말일까지 청구한다.

# 3-나. 계약(例)

## 1) PET-CT 공동운영 계약

6. “을”은 계약상 대금채권 일체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장비의 설치완료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3-나. 계약(例)

## 2) PET-CT 임대운영계약 중도 종료에 따른 합의서

“갑(의료기관)”과 “을(업체)”은 2008년2월1일부터 ‘PET-CT 공동운영계약’ (이하 “운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상호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2012년12월31일자로 “갑”의 원내 사정에 의해 “운영계약”의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운영계약” 조기종료를 요청한 바, 쌍방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 계약”의 조기 종료에 대해 합의하고 아래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1. “운영계약”에 따르면 “운영계약” 종료 이전에 양자간 사전 합의없이 PET-CT 또는 사실상 동일 용도의 장비를 “갑”의 구내에 설치하거나 사업목적상 사용할 수 없으나, “갑”의 원내 상황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계약”의 목적 대상 장비와 동일기능의 신품 의료장비를 “갑”이 직접 구매 및 설치하여 원내에 가동하는 것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 3-나. 계약(例)

## 2) PET-CT 임대운영계약 중도 종료에 따른 합의서

2. “운영계약”의 대상이었던 기존 장비는 “갑”의 원내 설치장소에서 “을”이 철거하여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며,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5. 본 합의서로서 “운영계약”이 정상 종료된 것에 대해 양자간 이의없이 합의하고, 既 종료된 “운영계약”에 명시된 약정 지급건수 또는 약정 지급 누계액의 미충족에 대해 상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본 합의서에 의거하여 “운영계약”이 중도에 조기 종료된 이후에 “갑”의 원내에 설치된 PET-CT 등의 영상진단 장비를 이용한 환자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FDG 등)을 0,000건에 이를 때까지 “을”로부터 공급 받기로 하며, FDG의 공급단가는 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결정한다.

# 3-나. 계약(例)

## 2) PET-CT 임대운영계약 중도 종료에 따른 합의서

그 이후에도 “갑”이 원내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단가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7. 본 합의서로서 “갑”과 “을”간의 방사성의약품(FDG 등) 공급계약을 갈음하며, 대금 결제 조건은 종전 “운영계약”의 약정을 따른다.

8. 본 합의서는 “운영계약”에 우선하며, 해석상 상충하는 조문의 경우 본 합의서를 따르도록 한다.



감사합니다.